

---

「2024학년도」

## 학생생활규정

---



2024. 4.

곡 선 중 학 교

# 목 차

1. 학생생활규정 .....	3
제1장 총칙 .....	3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	4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4
제4장 학생생활 .....	10
제5장 포상 .....	14
2. 학생선도 규정 .....	23
제1장 총칙 .....	23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23
제3장 선도(징계) .....	24
3. 학생자치 규정 .....	27
제1장 총칙 .....	28
제2장 학생자치회 .....	28
제3장 대의원회 .....	29
제4장 학생자치회장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 .....	29
제5장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임명 .....	31
4.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	32
5. 학생생활규정(관련서식) .....	34

# 1. 학생생활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정계),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제31조(학생의 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  
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7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  
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교실 여건에 따라 '지정된 좌석(위치)'은 수업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사가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1순위 : 해당 학년 교무실 2순위 : 본교무실 3순위 : Wee 클래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에게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자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 장소는 교사의 수업과 업무를 고려하여 각 교무실, 학생인권부실, 도서실, Wee클래스, 교장(교감)실 등 탄력적으로 운영함.</li> <li>- 분리 학생 지도는 해당교시 수업이 없는 교사가 분담(생활지도 봉사자)</li> <li>** '수업 시간의 자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을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li> </ul>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탁 및 분리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2회차 : 주의를 1회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li>- '수업 종료 후'는 해당교시 또는 당일 일과를 마친 시간으로 사안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li> <li>- 물품 분리보관 후 반환되었음에도 동일 교과 수업시간에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곧바로 물품 분리 보관할 수 있다.</li> </ul> </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ul> <p>※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물품분리보관 일지는 학년별로 관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ul>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훠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 제12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5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장 학생생활

### 제16조(등교)

- ① 9시까지 등교한다.
- ② 등교 후에는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 ③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또는 부담임 교사)에게 외출의 절차를 밟는다.
- ④ 외출시에는 반드시 외출증을 휴대해야 하며, 군것질 및 위험물 반입을 하지 않는다.

### 제17조(지각·결석)

- ① 무단 지각·결석이 지속될 경우 학부모와 상담(전화, 면담 등)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② 담임교사는 정해진 시각에 학생이 학습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제18조(복도 통행)

- ① 복도와 계단에서는 우측통행을 한다.
- ② 복도에서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장난이나 위험한 행동을 삼가 한다.

### 제19조(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

- ① 화장실 사용시 깨끗이 사용하고 질서를 지킨다.
- ②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③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 ④ 점심은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식사한다.

### 제20조(수업 준비 및 수업 시간)

- ① 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②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한다.
- ③ 수업태도 불량 및 방해,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는 학생은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통해 지도를 받는다.

### 제21조(주변활동)

- ① 주변은 학급별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② 주변은 수업 전에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교탁을 정돈하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③ 이동 수업일 경우에는 교실을 잠그거나 교실에 남아 교실정돈을 하고 도난방지 및 화재 예방에 힘쓴다.
- ④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한다.

### 제22조(권리보장)

-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23조(의사표현의 자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다.
- ②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예절)

- ① 항상 용의를 단정히 하고 학생 상호간에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② 복도나 실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한다.
- ③ 교무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벼운 목례로 예절을 지킨다.
- ④ 교직원 및 외부 손님에게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한다.
- ⑤ 교내외 모든 행사에는 행사 질서를 지킨다.

제25조(언어)

- ①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한다.
- ② 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③ 속어, 비어, 유행어, 통신언어 등을 피하고 바른 표준어를 사용한다.
- ④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한다.

제26조(용의 복장 및 휴대품)

- ① 교내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 교표와 명찰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 ② 귀걸이, 피어싱, 컬러써클렌즈, 메니큐어 및 색조화장은 하지 않는다.
- ③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으며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 하지 않는다. 실내화는 규정된 것(EVA 재질의 흰색 단화형)으로 착용한다.
- ④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개인 통신기기는 교육활동 전에 학급 별로 담임교사 책임하에 수거하여 휴대폰 수거 가방에 담아 보관, 수업 또는 교육활동 이 종료된 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 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 ⑥ 등·하교 시 및 일과 시간에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나, 일과 시간 중에는 체육복 착용을 허용한다.

⑦ 동절기에는 동복 교복 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착용할 수 있다.

⑧ 하절기에는 하복 체육복을 생활복으로 지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제27조(두발) 학생 두발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은 제한한다.

① 파마, 염색, 탈색, 삭발하는 행위

② 수염을 기르는 행위

③ 보편적인 두발 모양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형태

제28조(교복) 교복은 학교주관공동구매를 통하여 구입, 정해진 모양으로 착용하며, 절대 변형을 불허하고 동절기에 교복 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단, 동복/하복/춘추복은 각각 구분하여 착용해야 한다.

① 착용 기간: 동복/하복/춘추복은 기상관계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② 동복 규정

1. 남학생

- 동복 상의 주머니에 교표가 박음질 되어 있어야 하며, 명찰은 주머니 위에 탈부착으로 할 수 있다.
- 조끼와 와이셔츠를 착용하거나 폴라 티를 입을 수 있다.

2. 여학생

- 동복 상의 주머니에 교표가 박음질 되어 있어야 하며, 명찰은 주머니 위에 탈부착으로 할 수 있다.
- 조끼와 브라우스를 착용하거나 폴라 티를 입을 수 있다.

3. 공통

- 폴라티를 착용할 때, 색상은 무채색으로 하며, 규격은 일반적 목티의 기준으로 하되 얼굴까지 덮는 큰 목폴라 티는 제외한다.
- 남학생은 진한 회색 바탕에 자주색 가로 줄무늬가 있는 니트 조끼를 착용하고, 여학생은 짙은 남색에 무늬가 없는 V네크 니트 조끼를 착용한다.

③ 춘추복 규정

1. 남학생

- 동복용 와이셔츠에 규정된 조끼를 입는다.
- 교표는 조끼의 왼쪽 가슴 위에 박음질 되어 있고 명찰은 교표 위에 탈부착으로 할 수 있다.

2. 여학생

- 동복용 긴팔 브라우스에 조끼를 착용한다.
- 조끼 주머니에 교표가 박음질 되어 있고 명찰은 조끼 주머니위에 탈부착으로 할 수 있다.

④ 하복 규정

명찰 및 교표는 하복 및 춘추복 규정과 동일하다.

양말을 착용한다.

⑤ 여학생 바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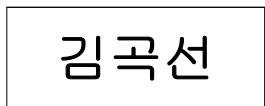
여학생의 경우 치마 또는 바지를 모두 착용하되, 자율적으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색상은 상의 외투색과 동일한 짙은 남색으로 한다.

⑥ 명찰 및 교표 부착 규정

<1학년>-파란색



<2학년>-흰색



<3학년>-노란색



1. 남·여학생 동복 상의

<1학년>-파란색



<2학년>-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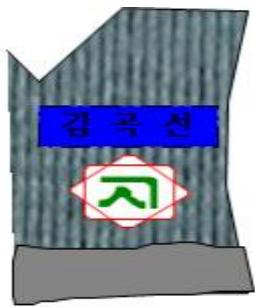


<3학년>-노란색



2. 남학생 춘추복 조끼 착용

<1학년>-파란색



<2학년>-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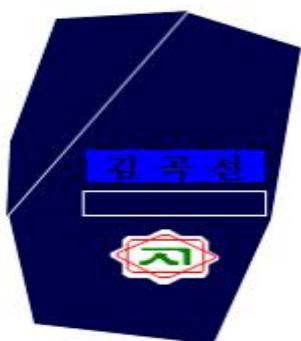


<3학년>-노란색



3. 여학생 춘추복 조끼 착용

<1학년>-파란색



<2학년>-흰색



<3학년>-노란색



4. 명찰 바탕색이 노란색과 흰색인 경우는 검정색 글씨, 파랑색인 경우는 흰색글씨로 한다.

5. 명찰의 경우 아크릴 재질의 탈부착형, 또는 천 재질의 고정형 둘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패용할 수 있다.

⑦ 교복 예외 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지정한 옷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신체장애로 팔이나 다리의 노출이 힘든 경우

- 전출예정자나 3학년 전입생으로 환절기의 교복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제29조(교외 생활 수칙)

①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②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길가에서 위험한 놀이는 금하도록 한다.

③ 단체나 행사 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 학생 신분에 맞는 용모와 행동으로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제30조(정보공시)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31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이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②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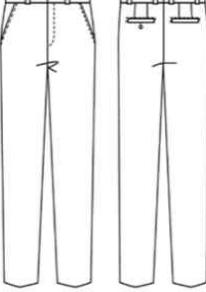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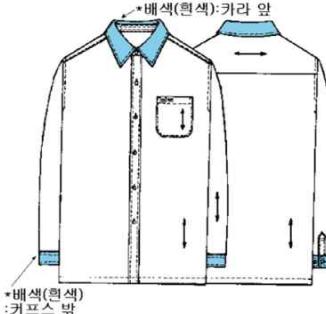
제5장 포상

제33조(목적 및 방침) 모든 학생이 바르고 명랑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올바른 교풍 진작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보다는 학생의 전인간적인 발달 과정에 바람직한 성장을 근본방침으로 한다.

제34조(표창영역 및 시기) 학기당 1회

- ① 모범부문: 인성과 행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과학습 활동 등 학생의 전 생활영역에 걸쳐 모범을 보인 학생
- ② 봉사부문: 남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일한 학생
- ③ 효행부문: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한 학생
- ④ 선행부문: 남을 위해 선한 일을 남달리 한 학생
- ⑤ 근면부문: 스스로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생활한 학생
- ⑥ 환경부문: 주위의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한 학생
- ⑦ 자립부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립적인 학생
- ⑧ 공로부문: 졸업예정자 중 학교의 명예와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학생

분류	디자인	사진첨부	디자인기준
여학생 동복 자켓		마크  단추 	<b>1. 걸감</b> - 훈용률(율 60%이상+폴리에스테르 40%) - 색상 : 짙은 곤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안감</b> - 훈용률(폴리에스테르 95%이상) - 색상 : 곤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3.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앞단주 2개, 소매단주 각 2개씩 / 명찰고리적용
여학생 동복 스커트		없음	<b>1. 걸감</b> - 훈용률(율 60%이상 + 폴리에스테르 40%, 젠트라) - 색상 : 녹색, 곤색 체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안감</b> - 훈용률(폴리에스테르 95%이상) - 색상 : 녹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3.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 (단점 시점 분량 - 5cm이상) - 앞판 맞주름 4개
여학생 동복 바지		없음	<b>1. 걸감</b> - 훈용률(율 60%이상 + 폴리에스테르 40%, 젠트라) - 색상 : 진곤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안감</b> - 훈용률(폴리에스테르 95%이상) - 색상 : 회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3.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단점 시점 분량 - 7cm 이상 - 바지통 : 5~6인치 정도
여학생 동복 블라우스		없음	<b>1. 걸감</b> - 훈용률(폴리에스테르 65% + 레이온25% + 우레탄 10%) - 색상 : 백색 긴팔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여학생 동복 니트		마크 	<b>1. 걸감</b> - 훈용률(율50% + 아크릴 50%) - 색상 : 짙은 곤색 <b>2.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앞면 교표 부착

분류	디자인	사진첨부	디자인기준
남학생 동복 자켓		마크  단추 	<p><b>1. 걸감</b>            - 혼용률(울 60% 이상)            + 폴리에스테르 40%, 젠트라)            - 색상 : 짙은 곤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p> <p><b>2. 안감</b>            - 혼용률(폴리에스테르 95% 이상)            - 색상 : 곤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p> <p><b>3.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앞단추 2개, 소매단주 각 2개씩 /            명찰고리적용</p>
남학생 동복 바지		없음	<p><b>1. 걸감</b>            - 혼용률(울 60% 이상)            + 폴리에스테르 40%, 젠트라)            - 색상 : 회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p> <p><b>2. 안감</b>            - 혼용률(폴리에스테르 95% 이상)            - 색상 : 회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p> <p><b>3.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단접 시접 분량 - 7cm 이상)            - 바지통 : 7~8인치 정도</p>
남학생 동복 와이셔츠		없음	<p><b>1. 걸감</b>            - 혼용률(폴리에스테르 65% + 레이온 25% + 우레탄 10%)            - 색상 : 백색바탕 소라줄 지색 긴팔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p> <p><b>2.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카라 및 커프스 백색</p>
남학생 동복 니트		마크 	<p><b>1. 걸감</b>            - 혼용률(울 50% + 아크릴 50%)            - 색상 : 회색바탕</p> <p><b>2. 디자인</b>            - 회색바탕, 가슴중앙 자주색, V넥            자주안쪽선, 소매 안쪽선</p>

분류	디자인	사진첨부	디자인기준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		마크	<b>1. 원단</b> - 혼용률(폴리에스테르 65% + 레이온 25% + 우레탄 10%) - 색상 : 백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디자인</b> - 주머니 한쪽 앞면 마크 부착 - 카라 : 앞면 굴림, 스커트 원단 배색 - 소매 : 스커트 원단 배색
		단추	
		흰색 5개	
여생 하복 스커트		없음	<b>1. 원단</b> - 혼용률(울 60% 이상 + 폴리에스테르 40%) - 색상 : 녹색·군색 체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안감</b> - 폴리에스테르 100% - 색상 : 녹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3. 디자인</b> - 길이 : 무릎 뒤 오금이하로 (단점 시접 분량 - 5cm 이상) - 앞판 맞주름 4개
여학생 하복 바지		없음	<b>1. 결감</b> - 혼용률(울 60% 이상 + 폴리에스테르 40%, 젠트라) - 색상 : 진·군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안감</b> - 혼용률(폴리에스테르 95% 이상) - 색상 : 회색, 단색, 무지, 은사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3.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단점 시접 분량 - 7cm 이상 - 바지통 : 5~6인치 정도
남학생 하복 와이셔츠		마크	<b>1. 원단</b> - 혼용률(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 색상 : 백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디자인</b> - 주머니 삼각형 후다모양 / 주머니 모양도 삼각형-앞쪽마크 - 카라 : 바지원단으로 배색
		단추	
		흰색 5개	
남학생 하복 바지		없음	<b>1. 원단</b> - 혼용률(울 60% + 폴리에스테르 40%, 젠트라) - 색상 : 회색 -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b>2. 디자인</b> - 본교 2학년과 동일 -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단점 시접 분량 - 7cm 이상) - 바지통 : 7~8인치 정도
넥타이		없음	<b>1. 원단</b> - 폴리에스테르 100% - 색상 : 자주색 - 남·여학생 동일

분류	디자인	사진첨부	디자인기준
남녀공통 생활복 상의		마크	<p><b>1. 원단</b>            - 폴리에스테르 100%            - 색상 : 진한 남색            - 신축성이 있는 원단 사용</p> <p><b>2. 디자인</b>            - 주머니 한쪽 앞면 마크 부착            - 소매, 주머니 : 0.3cm 파이핑 배색            - 아시밴드 부분, 카라 부분 체크무늬            - 하단 5cm 양쪽 옆트임, 옆트임 안쪽 체크무늬</p>
		단추	
		3개	
남녀공통 생활복 하의		없음	<p><b>1. 원단</b>            - 폴리에스테르 100%            - 색상 : 진한 남색            - 신축성이 있는 원단 사용            - 허리 고무줄</p> <p><b>2. 디자인</b>            - 옆선 : 흰색 2줄(1cm)            - 주머니 양쪽에 지퍼</p>

### <남녀공용 생활복>

	앞면	뒷면
생활복		
	앞	뒤

**<여자 동복 · 춘추복 · 하복>**

	앞면	뒷면
여자 동복		
여자 춘추복		
여자 하복		

## <남자 동복 · 춘추복 · 하복>

	앞면	뒤면
남자 동복		
남자 춘추복		
남자 하복		

## <남녀공용 동복 체육복>

분류	디자인	사진첨부	디자인기준
남녀공 통 동복 체육복 상의		마크  단추 3개	<p><b>1. 원단</b>            -면 50% 폴리에스테르 50%            -색상 : 검정색 원단에 백색 선 두줄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p> <p><b>2. 디자인</b>            -원쪽 앞면 마크 부착            -소매, 주머니 : 옆면 백색 선 두줄.            소매 끝 시보리</p>
남녀공 통 동복 체육복 하의		없음	<p><b>1. 원단</b>            -면 50% 폴리에스테르 50%            -색상 : 검정색 원단에 백색 선 두줄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허리 고무줄</p> <p><b>2. 디자인</b>            -옆선 : 흰색 2줄            -주머니 양쪽에 지퍼</p>

	앞면	뒷면
체육복		
	앞	뒤

## 2. 학생선도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사항을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도원칙)

- ①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와 치료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인권부장, 해당학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개최

중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 제8조(재심청구 및 부의)

-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심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도위원을 대체(부장교사 및 원로교사)할 수 있으며, 이때 학부모가 요구하고 학교장이 인정한다면, 외부인사(학부모대표, 운영위원, 폭력대책위원 등)를 위촉할 수도 있다.
- ④ 재심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 제3장 선도(징계)

#### 제9조(선도 종류 · 기간 · 방법)

내용 구분	선도종류	선도기간	'선 도 방 법'
선도 단계	1 단계 학교내의 봉사	5일 이내	<p>① 등교시켜 정상으로 수업을 하되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방과 후에 교내 환경정화 활동을 시킴 ② 1일 2시간 이내, 1회 5일 이내로 한다.</p>
	2 단계 사회봉사	5일 이내	<p>① 지역 행정기관 위탁 : 환경 미화, 교통 안내, 질서유지의 활동 ② 사회복지관 위탁 :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의 봉사활동 ③ 봉사활동 기관 입소 및 퇴소 시 학부모가 동행한다. ④ 1일 5시간 이내, 1회 5일 이내로 한다.</p>
	3 단계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이내	<p>① 지정된 특별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이수하도록 함 ② 상습흡연자 : 경기도 한의사 협회에 의뢰 금연 학교에 입교 조치 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③ 행동심리상 장애 : 상담치료 교육, 전문기관,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후 치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④ 특별교육 기관 입소 및 퇴소시 학부모가 동행한다. ⑤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p>
	4 단계 출석정지	30일 이내	<p>①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 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② 1회 10일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p>
출 결 상 황			<p>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선도에 불응한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은 선도 일수에 계속적으로 포함시키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③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④ 출석정지 기간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 제공</p>

#### 제10조(선도의 기준)

구 분	항	내 용	선도 단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이수	석정지
예 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input type="radio"/>			
	2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input type="radio"/>			
	3	동료 간 언행이 불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input type="radio"/>			
	5	성향이 불량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input type="radio"/>			
근 태	6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7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무단 가출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무단결석을 16일~30일간 하고 등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무단결석 31일 이상에서 학교출석일수 2/3 이전에 등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무단결석이 학교 출석할 일수 중 1/3 이상 넘은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 업	12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input type="radio"/>			
	13	수업 및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input type="radio"/>			
	14	수업을 거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input type="radio"/>			
	16	시험을 거부한 학생 동맹을 선동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7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준 법	18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input type="radio"/>			
	19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input type="radio"/>			
	21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input type="radio"/>			
	22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준 법	2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경찰서에 구속된 학생(석방 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인장 및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6	성향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7	남의 물건이나 돈을 절도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흡연, 약물, 환각제	28	흡연 음주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29	흡연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0	본드 및 환각제를 흡입·복용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소지품	31	흉기를 제작 또는 소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퇴폐 행위	32	도박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3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34	음란 서적 및 영상물을 소지·탐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5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6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을 야기한 학생	<input type="radio"/>			
금품 갈취	37	부당한 금품을 각출·절취·사취·강탈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정보통신 사이버 범죄	38	인터넷을 통한 학생신분에 벗어난 자료의 취득, 유출, 유통 및 상거래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9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프로그램의 불법유통(무단복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0	사이트를 불법 침입한 행위(해커-시험지 및 기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1	남의 정보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개설, 가입, 판매, 구매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2	사이버 상에서 성희롱, 비방, 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3	기타 사이버범죄행위로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 타	44	교사에게 욕설,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5	고의적으로 학교기물을 파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6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함				

#### 제11조(심의 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12조(선도 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정에서의 지도 관리 및 선도에 협조도록 요청한다.

제1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및 정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14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선도대장 및 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출결 처리) 선도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학생은 위탁기관의 출결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보호자의 책임)

- ① 학생이 교내·외 생활 중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보호자 포함)에게 도의적 사과와 함께 경제적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의 선도를 받을 경우 보호자는 시작과 끝나는 날은 인솔교사와 함께 지정된 장소까지 인솔한다.

### 3. 학생자치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곡선중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다.

#### 제2장 학생자치회

제4조(명칭) 본회는 ‘곡선중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중일 때는 그 기간 중에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제6조(권리·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의 제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인권부 학생회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 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 ⑥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 ⑦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⑧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⑨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 ⑩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⑪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법에 의거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 ①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특별활동
- ② 학예, 체육, 특기,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③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④ 학교 전통, 향토 및 전통 민속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활동
- ⑤ 학생 복지 증진 및 각종 봉사에 관한 활동
- ⑥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생 활동 등

제8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금지 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권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지도 기구)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지도는 학생인권부 학생회 담당교사가 지도 한다.

#### 제11조(효력정지)

- ①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② 본회의 의결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12조(학생자치회 임원 구성)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각 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 제13조(임무)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3학년 2학년 순으로)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 ① 회장 부회장의 선출 :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매년 12월 중에 선출한다. 회장은 선출 당시 2학년 중에서, 부회장은 선출 당시 1학년, 2학년에서 1명씩 선출한다.
- ② 부장과 차장의 선출 : 각 부 부장(3학년)과 차장(2학년)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대의원 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임명한다.

제15조(자격) 곡선 중학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당해 학년도 3학년 재학생은 선거권만 가진다.)

제16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17조(각 부의 임무)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무부 : 학생회 행사 업무 추진, 각종 회의 소집 기록, 선거 사무
- ② 예절부 : 기본생활습관 형성, 교칙 준수 및 예절 지도, 선행 활동, 캠페인 활동
- ③ 교육급식부 : 교육 급식운영 논의, 학생의 메뉴 추천, 교육 급식 운영을 위한 질서 등 약속 만들기
- ④ 미화부 : 실내외의 청결,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정화 활동, 자원 재활용
- ⑤ 봉사부 : 이웃돕기, 자율 봉사 활동, 위문활동, 지역 사회 및 사회 봉사에 관한 계획과 추진
- ⑥ 체육부 : 학생 체력 향상, 체육 행사, 질서 유지 활동, 친선 오락 활동, 보건 위생 활동
- ⑦ 도서부 : 도서관리, 독서활동, 문예활동, 학교신문 발간, 학교 간행물 도움 활동

(8) 정보부 : 컴퓨터 관련 홍보 및 사이버 예절 캠페인 활동

### 제3장 대의원회

제18조(대의원회 구성)

- ① 회장, 부회장, 학생회의 임원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회장은 대의원총회를 주관하고, 유고시 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한다.
- ③ 학급회장, 부회장은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 ④ 대의원회의 운영상 위원회 구성의 필요가 인정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소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각 부의 부장 8명, 각 학년의 학급회장 중 대표 1명씩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 ② 사업 계획 보고의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자치 회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수렴 및 전달
- ⑤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0조(회의)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① 정기회는 매 분기 초에 한다.(년 4회)
-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대의원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학생인권부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2일 전 학생인권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소위원회는 3항의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자치회장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

제21(학생회장선거)

- ①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2학기 말에 실시한다.
- ② 직선이 불가능한 아래 경우에는 학생인권부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가.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사항
  - 나.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기간을 주어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22조(선거 관리) 선거 관리 업무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①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되, 선거 관리 위원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된다.
- ② 선거 관리 위원과 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자는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제23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2주 전에 공고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명렬표로 대체할 수 있음)

제24조(후보자)

- 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의 후보자를 한 팀으로 한다. 단, 부회장은 3학년 진급 예정자 1명, 2학년 진급 예정자 1명을 포함한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4개 학급 이상 3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서명 날인한 학생추천서 1통, 담임추천서 1통을 각각 첨부하여 등록한다.
- ③ 한 사람의 선거권자가 두 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그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 ④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⑤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관리 위원장은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선거 관리 위원회는 등록이 없을 때 1차에 한하여 등록 마감일부터 2일간의 기간을 두어 재등록을 실시하여 선거할 수 있다.
- ⑦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부회장 후보자가 한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⑧ 선거 관리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제25조(후보자 자격)

- ①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자.
- ② 회장 출마는 3학년 진급 예정자로 하며 부회장은 2, 3학년 진급 예정자 1명씩으로 한다.

제26조(선거 운동)

- ① 기간 - 선거 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다.
- ② 선거 관리 업무 종사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 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④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학력, 공약, 선거 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⑤ 벽보의 규격은 4절지로 하고 5매 이내로 한다.
- ⑥ 합동연설회는 투표일에 실시하며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단 15분을 초과 할 수 없고 1명의 찬조 연설자를 둘 수 있다.)
- ⑦ 금품 제공 등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무효로 한다.

제27조(투표)

- ① 투표 방법 -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 ② 투표소의 설치 -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의 좌석,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⑤ 투표소에는 각 후보자 1인씩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⑥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28조(개표)

- ① 개표는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 ②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 관리하되, 투표시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 ③ 개표는 선거 관리 위원장과 참관인 입석 하에 선거 관리와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 관리인이 실시한다.
- ④ 제 3항의 개표 위원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각 학급에서 1명을 선발한다.(3학년)

## 제5장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임명

제29조(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을 공정하게 선출 임명하고 임명된 정·부 회장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학급자치회장, 부회장 임명)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제31조(후보 자격)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 ②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통솔력이 있는 학생

제32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

- ① 회장, 부회장은 학급회의 직접선거와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담임교사가 회장, 부회장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선거 방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나. 재직 인원과 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기)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연임 가능함)

제34조(교체) 회장,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① 회장, 부회장에 선출된 자가 후보자격조항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되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 ② 전 항에 의하여 회장, 부회장이 임명될 때에도 임명절차 및 선거방법 조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 ③ 보궐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로 한다.

제35조(회장의 직위)

회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의장 및 학생자치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36조(회장의 의무)

- ①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 ②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 ③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제37조(부회장의 직위와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제38조(규정의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담당교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른 예절과 질서의식으로 밝고 맑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명랑하고 자율적인 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조(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한다.

제3조(의견 수렴)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학생인권부는 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구성)

- 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교생활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총 8인 이상 12인 내외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학생의 수가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 ③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성과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개정)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작성한 개정안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인가를 득한 후 공포한다.

## 부 칙

제1조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

## 성찰문

20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 호 자	※말씀:  성명 :	담임	생활인성교육부장
		(사인)	

< 서식 2 >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년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거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식 3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4 >

##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 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학교장

< 서식 5 >

##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6 >

##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곡선중학교장 (직인생략)

[붙임 제1호 서식]

##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자 : )		
학년·반		생 년 월 일	
징계사실 여 부			확인자 : 학생인권부장 (인)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  
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2. 공약서 1부.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2호 서식]

## 추 천 장

### ■ 추천 후보자

○ 성명 :

○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  
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반	성명	서명	일련번호	학년·반	성명	서명
1	학년 반			16	학년 반		
2	학년 반			17	학년 반		
3	학년 반			18	학년 반		
4	학년 반			19	학년 반		
5	학년 반			20	학년 반		
6	학년 반			21	학년 반		
7	학년 반			22	학년 반		
8	학년 반			23	학년 반		
9	학년 반			24	학년 반		
10	학년 반			25	학년 반		
11	학년 반			26	학년 반		
12	학년 반			27	학년 반		
13	학년 반			28	학년 반		
14	학년 반			29	학년 반		
15	학년 반			30	학년 반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붙임 제3호 서식]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 위 원 명 단

[붙임 제4호 서식]

##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 다. 공약서 1부.

#### 3. 입후보자격

-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 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 중인 자
- 나.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붙임 제5호 서식]

##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 호	성 명	서 명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6호 서식]

##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장 후보자				부회장 후보자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7호 서식]

##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 · 반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  
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8호 서식]

##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  
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붙임 제9호 서식]

##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호	학년·반	성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0호 서식]

## 투표용지 예시

###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2		
3		
4		
5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11호 서식]

##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명	비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 2. 개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명	비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1. 회장, 부회장

선거인수 (가=나+ 마)	투표자수 (나=다+ 라)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라) (다)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검 열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붙임 제13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장 선거		
선거인수	인		
투표자수	인		
기권자수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명 (회장, 부회장)	득표수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무효 투표수	표		

#### 4. 당선자 명단

회장, 부회장		
기호	후보자 성명	학년·반
	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 위 원 장 (서명)

## 부위원장 (서명)

(서명)

(서명)

위 월 (서명)

위 월 (서명)

위 (서명)

[붙임 제14호 서식]

##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	성명	학년·반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붙임 제15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서명)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6호 서식]

# 당 선 증

곡선중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  
생자치회 임원선거에서 있어서 회장(부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공명선거안내게시문 예시1]

## 공명 선거 협조문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준]

#### 1. 경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 후에 발견된 때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예시 2]

##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 시에는 소중한 우리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무효표가 됩니다.

### [ 무효표 판정 기준 ]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투표용지임을 알 수 없는 경우
3.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또는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기표한 경우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어느 후보자 쪽에 치우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5.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의 문자를 기입하거나 √, △, ☆ 등의 기호를 기입하는 경우
6.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곡선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